##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86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 : 윤준병 · 김성회 · 황명선

허종식 • 박희승 • 박민규

문대림 • 박홍배 • 조계원

김윤덕 • 정동영 • 이병진

민병덕 • 서영교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기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도형'뿐만 아니라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를 한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된 점과 이에 대한 형사 소추 과정에서 사법부가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불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명확히 명시하여 원활한 친환경인증 단속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 중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을 "인증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제60조제2항제11호 중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품을 인증받은"을 "인증받은"으로, "자"를 "자 또는 같은 항제8호의2를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				
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의 금지)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8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u>잘못 인식할 수 있도</u>	<u>인증받은</u>				
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					
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u>인증받은</u> 내용과 다르게 광고					
하는 행위					
<u>&lt;신 설&gt;</u>	8의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생 략)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③ (생략)

11. 제30조제1항제8호(제34조제 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0. (		. –	/		
					_	인증
<u>받</u> .	<u> </u>					
<u>자</u>	또는	같은	항	제8	호의	2를
<u>위</u> !	반하여	시정	조치	]를	2회	०]
<u>상</u>	받은	<u>자</u>				

11의2. ~ 1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